조특법 제122조의2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1. 규정의 취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수입금액이 자 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2) 성실신고사업자가 일정요건3)을 충족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 이상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거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토록 하였다.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가 수입금액 노출장치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외형증가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균형의 적육시 이해를 돕고자 검토하 것의

3) 아래의 '3.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코체적으로 언급되었음 -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는 직전과세연도 첨부대상 사업자 기준금

이들에 대해 업종별로 경 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역 말한다(조특법§122의2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 도가 없으므로 당해 과/

<참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국세청고시 제2003-

엄

-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금융 및 보험업
 -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업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정

²⁾ 간편정로바닷가 이 경기 에 해 바다 등일급액루 해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다음 그를 지원하다 바라 그 사람이 작용되는 수입금액으로 목세형 회사(知2003호 다 호기 2003 이 함을 사람이 나라 그 사람이 작용되는 수입금액으로 목세형 회사(知2003호 다 호기 2003 4.7)를 할 어 버리스

3. 과세특례 적용요건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종별로 정한 일정기준 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및 지출증빙비율 기준 ³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이를 나눠 살펴보기로 형

(1) 계속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증가율

: 수입금액이 직전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 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관리시스템

- ③ 「영화진흥법」 제7 위원회가 운영하는 역
- ④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5)

나.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 신고소득금액이 직전과세연도 이상일 것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 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직전과세연보 소득 \$ 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조특법§122의2①3호).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합계액 증가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삲식]

(당해 과세연도 신용: - 직전과세연도 신용 직전과세연도 신용키

<참고>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25>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박

<동법 시행령 79의2▷

- 1. 소매업
- 2. 음식점업(다과점앱을 포함)
- 3. 숙박업
- 4. 목욕 이발 미용업
- 5. 여객운송업

1)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다. 수입금액 신고내용 기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및 전자적결제수단 등(신화建 등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 제공이됐나였으고 따르다 영위하는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년:17)봐[환기석 루리트레제라 보기다 다 그 교육 사기 등)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의 직하였다면 하네네 지하다면 하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의 직하였다면 하는 2006.3.1 연도의 수입금액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7.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 영 제74조제2항제7호의 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

§ [세금계산서미교부 통 사유] <동법 시행령 79의2> Ş 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작이 「우편법」 제15초제1항에 <「부가가치세법」 22②1호・ 9.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동법 시행규칙 25의2> 3.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2.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경우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5. 부동산중개업 세금계산서로서 다해 공급/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7. 가사서비스업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니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7.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현저히 곤란한 사업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 「소득세법」 81⑦▷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니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u>기재하여야 할 사</u>항의 전부 분이 직전과세연도의 교부분보다 증가하여야 한다(조특법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 매

< 「법인세법」 76⑨>

아니하다.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

§122의2(1)4호).

- 7 -

라. 지출증빙비율 기준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하여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7)에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 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제 외한 필요경비 중 아래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정규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

야 한다(조특법\$122의2(1)5호).

- 계산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

[산식] 정규증빙금액

> 국세청장 고시율8) (필요경비 총액-매입경비, 임차료, 급여등)

7) 다만 온갖가 기우기의 고유그려 전통보다 다짐에서 지도나 연급하였고, 서구 변수 수 사무하면 나 기본으로 전문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1. 농업, 수렵업 및 임얿(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기준금액

수입금액계좌9)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3억원 미만

(2)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신고내용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조특법§122의2①4호).

- ① 계산서 또는 세금계4
- 「부가가치세법」 제3 또는 동법 시행령 제 수단에 의하여 발행
 - 「조세특례제하법」 >
- 「영화진흥법」 제7 운영하는 영화관입장

「사시〕

나. 지출증빙 비율 기준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 서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¹¹⁾에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외 의 필요경비 중 아래와 같은 지출증빙서류(정규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법§122의2①5호).

- 계산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

4. 과세특례내용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는 적용기한은 2007년 전용기한은 2007년 전용기한은 과세표(전)를 적용

(1) 소득금액계산의 특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입금액에 업종별 정해? 고시하는 소득금액계신 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사 득세법 제56조의2의 규칙

- 12 - 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산식] _____ 정규증빙금액

¹¹⁾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종화를 만든 통계한 기술을 이 그래 이 경우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길 요경이 기술을 이 그래 이 경우 이 자료, 급여능) > 국세정경

¹²⁾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기준을 80%로 고시함(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3.17)

⁾ 과세특례 적용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와 세액공제의 특례를 각각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과세특례는 소득별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요건검토표와 세액공 제계산서는 소득별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항(별지 제74호의3서식 <mark>부</mark>효 작성방법 참조)

¹⁴⁾ 소금모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는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세제혜택으로서 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신고소독 전쟁에 대한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조특법\$122의2①3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소득금액이 직전과세 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⁵⁾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1-단순경비원) 경우 과세특례의 전기

[산식]

특례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합계액 소득률(1-단순경비율) 국세청장 고시율(경감율)16)

X

[산식]

[산식]

경감대상 수입금액 = 당해

× 국

(2) 세액공제의 특례

하다.

② 신규사업자

1)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17)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진 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한 금액으로 한다.

[산식]

경감대상 수입금액 = 당전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3) 기장세액공제 특례

[경감대상숙입금(姚일 20세산

18)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1] 계속 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을 참조 19)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1]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을 참조 19)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내용 중 [별표 1]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을 참조

산하고 신고납부하면서

에 20%를 적용한다(조특

것으로 봄

계속사업자 - 13 -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의 특례, 기장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다(조특법§122의2⑤).

2) 중복공제 배제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을 받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0의2)의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5. 사후관리

(1) 세액공제의 특례배제

(2) 경감 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기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

- ① 당해 과세연도에 대 입금액의 100분의 20
- ② 당해 과세연도에 대 이 경정된 손금의 10

<참고1> 국세청 고시(2006-6호, 2006.3.17)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같은법 시행령」제117조의2 및「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3 서식 및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 1.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단순경비율)의 60%("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률"이라하다)로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이하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당해과세연도의 수입금역 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율"이라 한다)은 [별표2]

- 4. 「조세특례제한법」제1223
 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정하여 고시하는 필요경율"이라 한다)은 80%로
-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의2의 규정의 성실신고 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께 [별지 제1호] 서식의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⁹

[별표 1]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및 신규 사업자의

_{업 종 별} 경감	계칭사약(입 쿰역) 약 신장기준율	석 용 률 (%) 얼자의 수입금액 적용률
농·수렵·임·어업	122	5.0
광 업	104	5.0
제 조 업	108	5.0
전기·가스·수도업	110	5.0
도 매 업	108	5.0
소 매 업	104	5.5
부동산매매업	103	5.0
건 설 업	103	5.0
음 식 업	107	5.5
숙 박 업	106	5.5
운수 창고 통신업	117	5.0
부동산임대업	112	5.0
교육서비스업	108	5.0
보 건 업	110	5.5
인 적 용 역 자	106	5.0
기 타	103	5.0

구	문	계속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 입 금 액 비 율		
	음식점업	8.0	86		
영 수 증	숙 박 업	6.0	55		
교부대상	소 매 업	9.0	75		
사업인 경우	기타서비스업	11.0	75		
	기타업종	9.0	75		
~					

열습증 교통대상 발표 파이션명 영 규 중 교 부 대 상 사업 자의 신 용 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 • —			
			 수입
		①상 호 (법인명)	
	I	고 ③성 명 구 (대표자)	
		이 (의료자)	
		5 사업장 소재지	
] 서 O 전
		⑦구 분	❸개설은항 체신관사
] 계좌신고] 계좌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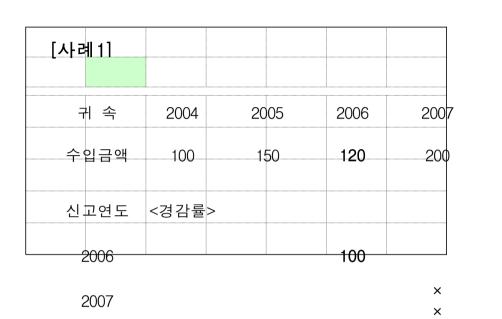
□ 계좌변경	
□ 계좌신고 □ 개좌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날받기 위하

□ 계좌신고 □ 계좌변경

□ 계좌신고

첨 부 : 통장 사본.(전자신고시

<참고 2> 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사례





-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 세액공제특례 적용

2008

2009

■ 2005연도 수입금액(150)이 2004연도 수입금액(100)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2006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100%) 적 용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연도 경·감률(50%)을 적용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2007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2006연도 수입금액(120)이 직전과세연도(2004

2008

300

×

X

×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

2005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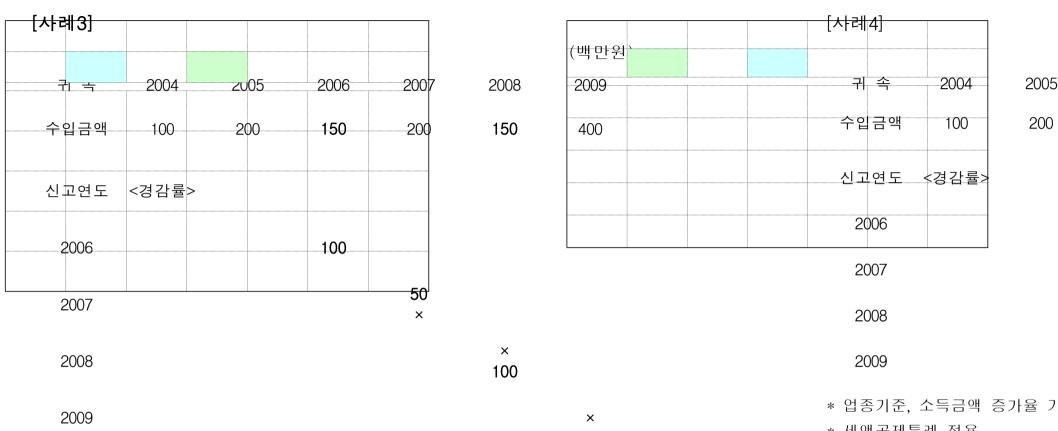
* 세액공제특례 적용

2008

2009

□ 2005연도 수입금액(130)이 과하여 2006연도 신고시 5 그리고 다음연도 경감률(5 전과세연도(2004년)의 수입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 22 -



- * 업종기준,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은 충족
-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7연도 수입금액(200)이 2006연도 수입금액(150)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였으므로 2008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당해연도 경감률 (100%)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경감률(5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8연도 수입금액 (150)이 직전과세연도(2006년)의 수입금액(150)보다 100분의 30을 초과

* 세액공제특례 적용

■ 2006연도 수입금액(150)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도 수입금액(200)이 200 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적용

<참고 3> 수입금액증가사업자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비교	<참고 4> 성실신고사
조 문 수입금액의 증가 세액공제 (조특법§122) 자동제으로 양서하되는 수이구에 조	소규모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조특법§122의2) 가에 수입금액 자동검증장치를 갖 춘 소규모	□ 소매업자 A의 종합
취 지 따른 세부담 완화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요건을 갖춘 사업자 지원	◇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 다음과 같을 경우 선틱
대 상 개인사업자	소규모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범 위 1년 이상 계속사업자 ① 사업자 요건	신규사업자 + 계속사업자 ① 소규모사업자요건	과세연도
• 신용카드 • POS • 영화관입장권· 전산망 •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합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 <u>만자</u> (도매 : 6억, 제조 : 3억, 서비스업 : 1.5억원)	2004년 (직전 과세연도
② 수입금액 요건: 아래 세액등 방법 중 '①'에만 적용	공제 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요건 공제 • 직전연도대비 130% 초과(수입) • 작전연도대비 100% 초과(소득금액)	딴 2005년 (당해 과세연도 2004년
대 상 ·직전연도 대비 100% 초과 요 건 ·1년이상 계속사업자	③ 수입금액 자동검증장치 · 신용카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POS, 영화관 통합전산 망 설치 ·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신고등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
	④ 성실사업요건 •성실기장 •적격증빙영수증 일정율 수취	ㅇ 단순경비율 : 22%, 소득 ㅇ 업종별 부가가치율 : 30 ㅇ 2006년도 수입금액 및
지 원 세 목 소득세	소득・법인・부가가치세	ㅇ 소득공제 : 460만원(기년
세액공제 : [⊕, ⓒ] 중 선택		명 (1) 甲의 경우
① 수입금액 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 26 -

<소득세> : 과세특례 : 다

①수입금액 5%에 상당하는 세액

• 소득금액계산특례 중 선택 적용(개인)

② 세액계산의 특례: '가'와 '나' 적용

가. 세액공제액

- 경<u>감대상 수입금액</u> = 80백만원= 300백만원 (200백만원×1.1) = 당해 수입금액 - (직전연도수입금액×신장율)
- 세액공제액(2005년)

당해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연도수입금액 × 경감율 (첫해 100%,다음해 50%)

6.5백만원 × 80백만원 300백만원

× 100% = **1.7**백 만원

- → 1.7백만원을 2006년도 신고시(2005년 귀속)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2006년)

6.5백 만원 ×

80백만원 300백만원

× 50%

= 0.9백 만원

→ 0.9백만원을 2007년도 신고시(2006년 귀속) 소득세에서 공제

	1 +11		
나. 기장세액공제	액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 6.5백만원× 20%= 100만원(한도적용)

21) 60%로 고시(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3.17)됨

○ 세액경감액 = 0.3백만원 = 100만원 - (6.5백만원×10%)

(2) 乙의 경우

<소득세> : 과세특례 : 다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ㅇ 소득금액 = 37백만원 =

산출세액 = 4.6백만원

[수입금액

ㅇ 세액경감액 : 1.9백만원

② 세액계산의 특례: '가'

가. 세액공제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 =
- 세액공제액(2005년)

당해산출세액 × 경감다 당해안

6.5백 만원 ×

→ 1.4백만원을 2006년

■ 세액공제액(2006년)

- 28 -

나. 기장세액공제액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 6.5백만원× 20%= 100만원(한도적용)

○ 세액경감액 = 0.3백만원 = 100만원 - (6.5백만원×10%)
□ 세액경감효과 비교

구	분	2005귀속	2006귀속	소 계
①소득금액계산 특	특 례	1.9	_	1.9
②세액계산 특례	수입증가분	1.4	0.7	2.1
②세력세인 득네	기장세액공제	0.3	0.3	0.6

□ 2006년 종합소득세(2005년 귀속)과세표준신고시 다음연도의 진이 예상되어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2004연도 귀속 수입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들의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u> </u>
	[별지 제74호의3서식] 2006.4.10개정
	성실신고사업자
	①상호(법인명) 신
(백만원)	3성 명 청
합 계	<u> </u>
1.9	
2.8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8해당 연도 수입금액 9소득 (1-단순>
업항부 법항구	
입금액의	
금액계산	2.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가.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4년 200
	나.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다. 경심대성 구립급박 세선 ②해당 연도 ③직전 연도 ④국세

수입금액(①) 수입금액

	(뒤	쪽)		[별지 7	세74호의3서	식 부표]	2006.4
작 성 방 법							성실
					<u></u> ①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1. 소득금액 계산	의 특	·레		신		인 명)	
또는 2. 세액공제의 특례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 1	-		청	③성 - 5주	명 소	
. (내국)법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 세	백공제	의		<u>્</u>	 ⑥사업정	-	
특례만 적용됩니다.				1. 수입	입금액 증가	율 기준	
. ⑧해당연도 수입금액란은 해당 사업장의「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입	합니디			_	<u>직전 연도</u> 수입금액 _		해당 연 수입금 ⁽
. ⑫해당 연도 수입금액·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43 조	.에 따	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⑬직전 연도 수입금액	란의	급		2. 소	득금액 증가	율 기준	
액을 기입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		_	<u>직전 연도</u> 노득금액		대당 연 독금의
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
합니다.		1	1	3. 신용	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약
. ②연도별 경감률란은 해당 연도는 100%, 그 다음 연도는 50%를 기입합니다.				신용	직전 연도 용카드등의 금액 합계의	신-)해당 (용카드]금액 [*]
i. ②해당 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	는 부	동					
산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종합소	. – –	•			용카드등의 해당 연도		
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		신 원	위 8 년 <u>수</u> 용카드등의 금액 합계의		해당 연 수입금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업	합니다	7.		TH		7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

②의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ㆍ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 장(소득금액을 추계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합니다)의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또는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컨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
- 3. ⑧・⑨・⑤・③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 4. ⑭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 5. ⑱·⑲·⑳·㉑·㉑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2제4항의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6. ১ 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ᅩ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 7. ④정규증빙금액은「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 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 8. ②·③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계산서 금액을 기입합니다.
- 9. ⑫ · ⑰ · ㉓ · ㉓ · 웹 · 웹 · ④ 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참고 6>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 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 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3
 - 1. 직전 과세연도(신규들 과세연도) 업종별 수 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같다)이 대통령령이

- 34 -

3 단체 과세여도 스트

는 과세표준이 증가히

- (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 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 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 2. 세액공제의 특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 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⁵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가하 그애으로 하되 단체 과세연도에 시고로 사업은 개시한 사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 의 20으로 한다.

-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 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 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경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 러하지 아니하다.
-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
-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학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최
 -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더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 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 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가 운영하는 영화관업

- 4. 국세청장이 정하는 F 액계좌
-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3 은 「부가가치세법」 제 득세법」 제81조제7항 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및
-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 요건"이라 함은 다음 2
- 1. 장부를 비치・기장할
- 2. 「소득세법」 제160 경우에는 「소득세법 의 금액을 제외한 필 규정에 의한 지출증」

청장이 정하는 비율

-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3이라 함은 국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 ⑧~⑪ (생략)
- ①법 제122조의2제2항·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가기치세 확정신고와 함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형